

『경제 선진국』을 넘어 『안전 선진국』으로...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장 전종표 (대구신문, 2022.03.29.)

우리나라는 작년 7월 UN산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UN회원국의 만장일치 가결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최초의 사례이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0위, 무역 규모는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인당 명목 GDP는 35,000달러를 돌파하여 스페인을 추월하고 이탈리아와 대등한 수준이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의 세월 동안 가파른 고도성장을 이어오면서 삼성, 현대 자동차, LG 등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당당히 올라선 것이다.

최근에는 K-POP,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당당히 주류문화로 대접받으면서 덩달아 음식과 패션도 한류 기류에 합류함으로써 『경제 선진국』을 넘어 『문화 선진국』으로도 약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 많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2011년 7.9명에서 2019년 4.6명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입법 배경으로도 작용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명확한 처벌대상과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전문가의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자로 해당 기업 대표 이사나 현장책임자(건설업의 경우)를 입건함으로써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했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자료(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과 현장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9가지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법의 목적을 살펴봐도 사후조치인 처벌이 핵심은 아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이다. 사업장과 공공장소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예방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로 올라온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모아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더디고 힘이 들더라도 일관성 있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태도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안전보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과 사후처리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안전보건』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이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부터 갖추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회피로를 찾기보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모아져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은 다시금 한 단계 도약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현재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